

투 자 설 명 서

BEST 신종 MMF GS-1호 (법인가입용)

이 투자설명서는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SH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명 및 상당가능전화번호	굿모닝신한증권 ☎ 1588-0365	대우증권 ☎ 1588-3322
	메리츠증권 ☎ 1588-3400	한화증권 ☎ 1544-8282
	CJ투자증권 ☎ 1588-7171	동부증권 ☎ 1588-4200
	서울증권 ☎ 1588-6300	신흥증권 ☎ 080-7733-080
	푸르덴셜투자증권 ☎ 1588-4588	삼성생명 ☎ 1588-3114
	제주은행 ☎ 1588-0079	부국증권 ☎ 1588-7744
	NH투자증권 ☎ 1588-4285	신한은행 ☎ 1544-8000
	한국투자증권 ☎ 1544-5000	신영증권 ☎ 1588-8588
	대한투자증권 ☎ 1588-3111	SK증권 ☎ 1588-8245
	동양종합금융증권 ☎ 1588-2600	삼성증권 ☎ 1588-2323
	하나증권 ☎ 1588-1112	현대증권 ☎ 1588-6611
	메리츠종합금융 ☎ 777-7711	교보증권 ☎ 1544-0900
	외환은행 ☎ 1544-3000	한양증권 ☎ 1588-2145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7 년 8월 27일

5.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판매회사 (투자설명서 p.14 참조) 자산운용회사 (www.shasset.com)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
----------------------------------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1쪽)

1. 명 칭 : BEST 신종 MMF GS-1호 (법인가입용)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법인전용 단기금융간접투자신탁, 추가형·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 SH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1~3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CD 및 어음등에 투자하여 단기 이자소득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안전성 추구 -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한 저평가 종목 편입
3. 주요 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채권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5등급으로 매우 낮은 수준 투자위험 - 따라서 적은 위험으로 높은 유동성의 투자를 원하시는 고객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hasset.com)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서준식	39세	팀장	91개	71,742억	-고려대 경영학과, Temple대 MBA -채권운용 13년 (삼성생명, 삼성투신, 한국투신)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1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

연 도	최근1년 (‘06.8.25~’07.8.24)	최근2년 (‘05.8.25~’07.8.24)	최근3년 (‘04.8.25~’07.8.24)	최근5년 (‘02.8.25~’07.8.24)	설정일 이후 (‘03.10.21~’07.8.24)
투자신탁	4.75	4.35	4.03		3.98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본문 3~6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06%
		판매회사보수	연 0.10%
		기타보수	연 0.02%
		보수합계	연 0.18%
	기타비용	연 0.01%	
총보수·비용비율 ¹⁾		연 0.19%	

주 1)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 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7.8.27.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30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2영업일(D+1) 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3영업일(D+2) 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0000000@000.000)**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7년 ____월 ____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종류 법인전용 단기금융간접투자신탁, 공모형, 추가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SH자산운용주식회사
- 5. 최초설정일등
연혁
 - 2003.10.21 최초설정
 - 2004.07.05 약관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적용 신법편드로 전환)
 - 2005.03.02 운용역변경 (김형호 → 서준식)
 - 2005.06.07 약관변경 (LATE TRADING 적용)
 - 2005.10.31 약관변경 (감독규정 변경에 따른 약관변경)
 - 2005.11.21 약관변경 (법인전용MMF 익일환매제시행에 따른 약관변경)
 - 2006.03.14 약관변경 (신탁보수 인하)
 - 2006.07.01 약관변경 (법인전용MMF 익일기준가 매입 시행에 따른 약관변경)

- 6. 수탁고추이
(순자산가치 기준)
(단위: 억, %)

구분	현재 (07.08.24)	6개월전 (07.02.24)	1년전 (06.08.24)	1년6개월전 (06.02.24)	2년전 (05.08.24)	2년6개월전 (05.02.24)	3년전 (04.08.24)
수탁고	8,739	8,943	4,226	961	2,287	3,258	2,605
증감율	-2.28	111.6	339.85	-57.98	-29.81	25.07	19.58

※ 6개월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 CD 및 어음등에 투자하는 MMF 투자신탁으로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보다는 이자수령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주요투자전략
 - 주 운용대상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최대한 안전성 추구
 -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한 저평가 종목 편입
 - 위험관리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사용할 예정

3. 주요투자위험

당해투자신탁은 주로 채권 등 유동성이 우수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만약, 채권부
 에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어음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등의 원인이 생길 경
 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
 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의 이자수령등에 따른 이자소득을 추구하므로 단기 실세금
 리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나
 시가형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가격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므로 5등급(아
 래 위험등급표 참조)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고 적은 위험과 높은 유동성을 동시
 에 확보하고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예시>

등급	등급 내용	등급 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고수익 추구형으로서 성장형 운용전략을 추구하며 높 은 시장변동성을 갖는 상품 예) 주식형
2등급	높은 위험	고수익 추구형이지만 1등급보다는 적은 시장변동성을 갖고,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을 대부분 투자하면 서 일부 채권 등 안전자산을 활용하는 상품. 또는 원 금손실 가능한 장외파생상품 펀드 예) 주가연동 파생상품, 주식혼합형, 인덱스형
3등급	중간 위험	위험 중립 추구형으로서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부분 투자함과 동시에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을 일부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품 예) 채권혼합형, 투기등급 채권형
4등급	낮은 위험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등 안전자산위주로 투자하 는 상품 또는 원금보존추구형의 장외파생상품 예) 채권형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위주로 투자·운용 하는 상품 예) MMF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 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 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SH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shasset.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	---

6.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서준식	팀장	-고려대 경영학과, Temple Univ. MBA -삼성생명 증권사업부(투자분석팀,주식팀) 삼성투신 채권운용부 한국투신 채권운용부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기 간	최근1년 (06.8.25~07.8.24)	최근2년 (05.8.25~07.8.24)	최근3년 (04.8.25~07.8.24)	최근5년 (02.8.25~07.8.24)	설정일 이후 (03.10.21~07.8.24)
투자신탁	4.75	4.35	4.03		3.98
비교지수*					

* 비교지수 :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 간	최근1년차 (06.8.25~07.8.24)	최근2년차 (05.8.25~06.8.24)	최근3년차 (04.8.25~05.8.24)	최근4년차 ¹⁾ (03.10.21~04.8.24)	최근5년차
투자신탁	4.77	3.95	3.39	3.77	
비교지수 ²⁾					

주1) 해당기간 수익률은 연환산수익률

2) 비교지수 : 없음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비 고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	-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	-
환매수수료	없음	-	-
합 계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 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10%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일반사무관리 보수	-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1%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0.19%	-

※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5년 10월 21일~2006년 10월 20일)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 및 비용	37	113	193	412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8.27.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다만, 최초설정일에는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구분	2 영업일	3 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매수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교부일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7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2. 환매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2 영업일	3 영업일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17시(오후5시) 경과후 환매신청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입 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 이 투자신탁의 매입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 연기·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등>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주 운용대상을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최대한 안전성 추구
-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기 위한 저평가 종목 편입
- 위험관리는 신용평가등급 제한 및 펀드의 듀레이션 조절전략을 사용할 예정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위험요약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채권등 유동성이 우수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만약, 채권부분에서의 부도가 발생하거나, 어음등의 투자에서 발행사의 파산등의 원인이 생길 경우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위험	엄격한 신용등급별 투자제한으로 신용risk 발생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상황의 변화와 채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시장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회사는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회사의 투자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회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또는 제한위험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거나 유가증권시장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

	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으며,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와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환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대상세부설명
1. 채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2. 어음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3.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단기금융투자신탁의 수익증권(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법에 의해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신탁약관을 변경한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투자신탁자산총액의 5%미만
4.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5.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6. 금융기관에의예치	(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7. 기타 사항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자산과의 거래 자산운용회사는 약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약관 부칙의 적용 특례사항 등 (약관변경일 2004.7.5)

(적용특례)①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및 어음등”은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투자신탁재산 편입일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채권(20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최하위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한다) 및 A3(-)이상인 기업어음”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채권 및 기업어음을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 후 당해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이 BBB(-)에 미달하게 되거나 당해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이 A3(-)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락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부터 1월 이내에 처분한다.

②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6월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는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가 1년 이내인 예금에 한함)”으로 한다.

③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120일(국채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행위”로 한다.

④제37조,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 제3호,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은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38조제1항제2호나목은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해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에 한한다)에 신탁재산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

⑥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등 중 양도성정기예금증서는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신탁재산운용의 특례)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투자신탁재산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의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추가 판매의 제한) 신탁약관 변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투자신탁재산이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판매할 수 없다.

(미수금등의 처리) 약관변경일 이전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판매회사가 부담하고, 약관변경일 이후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제46조(미수금등의 처리)를 따른다.

4. 투자제한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①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채권 및 어음등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20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2개등급”이라 한다)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투자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투자증권으로서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2개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투자증권
- ③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조 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권 및 어음등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용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및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이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입된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및 어음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운용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비율제한에 관한 사항)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투자증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동일종목 투자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기타 거래금액((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2개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투자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수익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7. 장외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목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3호의3의 자산 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

- 나. 단기금융투자신탁 및 단기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간접투자증권
- 다.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 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투자증권의 가치 또는 투자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
- 마. <삭제>
- 바. 위의 라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 9.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잔존기간 1년 이상의 채권 및 어음등에 투자하는 행위
- 10.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행위
- 11. 이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및 수익자에 관한 사항)

- * 이해관계인이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함.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예외사항)

- ②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약관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비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④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평가시 배점기준

구 분	매매체결능력	정보제공능력	거래보안유지	중개수수료	결제이행능력
배점기준	35%	35%	10%	10%	10%

(2) 평가방법

- 가. 상기 배점 비중에 따라 매분기별 1회 평가를 원칙으로 함
- 나. 평가주체는 채권운용 1팀, 채권운용 2팀 공동으로 함
- 다. 중개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자산별로 평가함
 - 법 제2조제7호에 의한 투자증권(주식제외)
 -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주식관련 파생상품 제외)

(3) 약정배분 기준

- 가. 약정배분기준은 거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 나. 기여도에 따라 증권사/은행은 20개사, 선물사는 10개사를 선정함
- 다. 상기 선정된 중개사에 대해 70%이상을 배정함
- 라. 특정회사 최대 배정 가능한도는 채권등의 경우는 총 약정금액의 20% 이내, 금리선물의 경우는 총 약정금액의 30% 이내로 함. 단, 관계증권사 또는 계열회사인 선물중개회사의 경우는 총 약정금액의 50% 이내로 함

(4) 평가 및 약정배정 실적에 대한 보고

- 매 분기별 1회 CIO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보고 이행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SH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회사 연혁	1988. 03. 29. 한양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2. 11. 19. 조흥은행에서 인수 1997. 03. 31. 조흥투자신탁운용(주)로 전환 2003. 09. 06. 신한금융지주회사로 편입 2006. 04. 01. SH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 주요 업무

(1)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범위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자사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투자설명서의 작성
- 수익증권의 발행
- 금융감독위원회 및 간접투자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 업무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항 목	요약 대차대조표		항 목	요약 손익계산서	
	제 19 기 (06.4.1~07.3.31)	제 18 기 (05.4.1~06.3.31)		제 19 기 (06.4.1~07.3.31)	제 18 기 (05.4.1~06.3.31)
유동자산	92,059	80,083	영업수익	34,957	25,445
고정자산	8,246	6,639	영업비용	10,362	9,077
자산총계	100,305	86,722	영업이익	<u>24,595</u>	<u>16,367</u>
유동부채	4,948	4,386	영업외수익	322	3,140
고정부채	637	714	영업외비용	431	316
부채총계	5,585	5,100	경상이익	<u>24,486</u>	<u>19,193</u>
자본금	45,000	45,000	법인세차감전		
이익잉여금	47,710	34,552	순이익순손실	24,486	19,193
자본조정	2,011	2,070	법인세	6,829	5,386
자본총계	94,721	81,622	당기순이익	17,657	13,807

4. 운용자산 규모 (2007.08.24 현재)

(단위 : 억좌)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합 계
24,745	12,853	3,963	52,390	10,724	2,977	3,128	0	110,899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 고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서준식	39	팀장	106개	77,029억	- 고려대 경영학과 Temple Univ. MBA - 삼성생명 증권사업부 (투자분석팀, 주식팀) 삼성투신 채권운용부	팀운용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굿모닝신한증권	메리츠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연락처	1588-0365	1588-3400
홈페이지	www.goodi.com	www.imeritz.com
회사연혁	1973. 04. 효성증권 설립 1983. 12. 쌍용투자증권 상호변경 1999. 0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변경 2002. 04. 굿모닝증권-신한증권 합병 2002. 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1973. 02. 한일증권 설립 1990. 10. 한진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2000. 03. 메리츠증권으로 사명변경 2000. 04.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

회 사 명	CJ투자증권	서울증권
주소	서울시 중구 장교동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연락처	1588-7171	1588-6300
홈페이지	www.cjcyber.com	www.seoulstock.co.kr
회사연혁	1989. 10. 설립 1997. 09. 제일제당그룹으로 편입 1999. 01. 제일투자신탁증권으로 변경 2004. 08. CJ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1954. 05. 설립 1999. 06. 한일투신 인수 2001. 08. 대림에서 계열분리 2002. 12. 제일선물 인수

회 사 명	대우증권	한화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연 락 처	1588-3322	1544-8282
홈페이지	www.bestez.com	www.koreastock.co.kr
회사연혁	1970. 09. 동양증권(주) 설립 1983. 10. 대우증권으로 상호 변경 1983. 12. 삼보증권 흡수합병	1962. 07. 성도증권(주) 설립 1976. 05. 한화그룹 인수 1977. 11. 제일증권으로 상호 변경 1996. 10. 한화증권으로 상호 변경

회 사 명	동부증권	신흥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연 락 처	1588-4200	080-7733-080
홈페이지	www.winnet.co.kr	www.shs.co.kr
회사연혁	1982. 12. 국민투자금융 설립 1988. 09. 동부투자금융로 상호변경 1991. 07. 동부증권으로 상호변경 2004. 05. 갯모어증권중개 인수합병	1955. 07. 설립 2000. 06. 모닝스타코리아 설립

회 사 명	삼성생명	푸르덴셜투자증권
주 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8
연 락 처	1588-3114	1588-4588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www.pru.co.kr
회사연혁	1957. 동방생명보험 설립 1963. 삼성그룹계열사로 편입 1989. 삼성생명보험(주)로 상호변경	1982. 06. 국민투자신탁(주) 설립 1997. 02. 업종전환 및 증권업무개시 1997. 04. 현대그룹계열사로 편입 2004. 02. 미국 푸르덴셜금융이 인수 현투자증권에서 푸르덴셜투자 증권으로 상호변경

회 사 명	NH투자증권	제주은행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	제주도 제주시 이도1동 1349
연 락 처	1588-4285	1588-0079
홈페이지	www.nhis.co.kr	www.e-jejubank.com
회사연혁	1982. 11. 고려투자금융 설립 1991. 07. 증권업으로 전환 동아증권으로 상호변경 1998. 10. 세종증권으로 상호변경 2006. 02. NH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1969. 09. 제주은행 창립 2002. 05.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회 사 명	부국증권	신한은행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연 락 처	1588-7744	1544-8000
홈 페이지	www.bookook.co.kr	www.shinhan.com
회사 연혁	1954. 08 부국증권 설립 1995. 05 자본금 668억원으로 증자	1982. 07. 신한은행 창립 1989. 11. 주식상장 2001. 0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2003. 09. 조흥은행 신한지주 인수

회 사 명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연 락 처	1544-5000	1588-8588
홈 페이지	www.truefriend.com	www.shinyoung.com
회사 연혁	2005. 03. 동원금융지주 한투증권 자회사 편입 2005. 06. 동원증권, 한투증권과 합병	1956. 02. 신영증권 설립 1987. 08. 주식상장 1995. 08. 신영투신 설립

회 사 명	SK증권	대한투자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연 락 처	1588-8245	1588-3111
홈 페이지	www.priden.com	www.daetoo.com
회사 연혁	1955. 07. 신우증권 설립 1963. 11. 경신증권으로 상호변경 1968. 09. 동방증권으로 상호변경 1989. 10. 태평양증권으로 상호변경 1992. 03. 선경증권으로 상호변경 1998. 01. SK증권으로 상호변경	1968. 12.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7. 02. 대한투자신탁 영업개시 2000. 06. 대한투자신탁증권으로 상호변경 2003. 06. 대한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회 사 명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5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연 락 처	1588-2600	1588-2323
홈 페이지	www.myasset.com	www.samsungfn.com
회사 연혁	1962. 06. 일국증권 설립 1985. 06. 동양증권으로 상호변경 2001. 11. 동양증권-동양현대증권 합 병, 동양종합금융증권 출범 2005. 10. 동양오리온투자증권 합병	1982. 10. 창립 1991. 03. 증권회사로 전환 2000. 12. 삼성투자신탁증권 합병

회 사 명	하나증권	현대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연락처	1588-1112	1588-6611
홈페이지	www.hanastock.co.kr	www.youfirst.co.kr
회사연혁	1962. 02. 동남증권 설립 1992. 07. 보람증권으로 상호변경 1999. 05. 하나증권으로 상호변경 2006. 10.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1962. 06. 증권업 허가 1986. 현대증권으로 상호변경

회 사 명	교보증권	메리츠종합금융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연락처	1544-0900	777-7711
홈페이지	www.iprovest.com	www.imeritzbank.com
회사연혁	1949. 11. 회사설립(구 대한증권) 1994. 04. 교보증권으로 상호변경 2002. 07. 증권거래소 상장	1977. 07. 대한중금 설립 1977. 11. 한불종합금융으로 상호변경 2007. 01. 메리츠종합금융으로 상호변경

회 사 명	외환은행	한양증권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연락처	1544-3000	1588-2145
홈페이지	www.keb.co.kr	www.hygood.co.kr
회사연혁	1967. 01. 한국외환은행 설립 1994. 04. 증권거래소 상장	1956. 03. 한양증권 설립 1962. 11. 증권업 면허 허가 1989. 10. 외국에서의 증권업 허

2. 주요업무

(1) 판매회사의 업무 범위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 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 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사 연혁	2001. 11. 국민, 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2001. 11. 증권거래소 상장 2003. 09. 국민신용카드 합병 2003. 12. 완전 민영화

2. 주요업무

(1) 수탁회사의 업무 범위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 해당사항 없음 -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연락처	02-3215-1482	02-399-3350	02-739-359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2000. 6. 29.
자본금	30억원	50억원	47.5억원

2. 주요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제4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구성과 권한>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

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 확인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게의 통지
- ②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확인장소> 수시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BEST 신종 MMF GS-1호(법인가입용)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에게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 (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